

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53호서식] <개정 2019. 12. 31.>

##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납세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 )	전자우편주소

대리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 )	전자우편주소

청구내역	①통지기관				
	②통지받은 연월일				
	③통지내용	세목		그 밖의 내용	
		세액			
	④청구세액	통지된 세액		청구대상 세액	
⑤청구내용 및 이유(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)				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,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,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.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(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자(납세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

(접수번호 호)

성명(법인명)	주소(영업소)
접수자	접수일자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##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### □ 청구내역

- ① 통지기관: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.
- ② 통지받은 연월일: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③ 통지내용: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.
- ④ 청구세액: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.
- ⑤ 청구내용 및 이유: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,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.

### □ 제출기관

- 특별시세 · 광역시세 · 도세[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 ·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·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]의 경우에는 시 · 도지사에게, 특별자치시세 · 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에게, 시 · 군 · 구세[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 ·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·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처리절차

